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168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8. 5. 10.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556,59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74,65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6. 5.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6,713,07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3,60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5.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483,01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13,31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202,97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97,31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6. 6. 원고 D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068,13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89,60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E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243,730원 및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9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4. 7. 1., 원고 B은 2014. 4. 21., 원고 C은 2014. 5. 9., 원고 D은 2014. 12. 16., 원고 E은 2014. 5. 30. 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공동주택 신축 및 일괄매도 약정에 따라 신축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았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일괄매각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redacted]시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세 감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은 공동주택의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각 부과 · 고지하였고(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원고	처분일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A	2018. 5. 10.	16,011,210	1,601,120	6,556,590	914,920	374,650
	2018. 6. 5.	16,029,300	1,602,930	6,713,070	915,960	383,600
B	2018. 5. 21.	12,861,870	1,286,180	5,483,010	734,960	313,310
C	2018. 5. 10.	12,486,130	1,248,610	5,202,970	713,490	297,310
D	2018. 6. 6.	13,580,210	1,358,020	5,068,130	776,010	289,600
E	2018. 5. 10.	12,583,950	1,258,390	5,243,730	719,080	299,640

라. 이후 피고는 당초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감사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지적과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감사원이 심사청구에서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감심 2014-477)가 확인되고,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의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을 이유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52호),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6누1184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납세자 패소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이나 대법원 2016두46212 판결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분양'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건물을 [redacted]공사에 일괄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비로소 이 사건 각 건물이 [redacted]공사에 일괄매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견해를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일괄매각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실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취득세가 부과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세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주성

판사 차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4

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끝.